

응시원서 작성요령

-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.
 - 『응시원서』는 아래의 <<작성요령>>에 따라 작성한다.
1. 「※응시번호」 : 기재하지 않음
 2. 응시분야 : 공무원(식당종사원)
 3. 주 소 : 현재 거주하는 곳(우편물 수령 등)을 정확히 기재
 4. 성 명 : 정자(正字)로 응시원서(원본), 응시원서(부분), 응시표 세 곳 모두 기재한다.
 5. 주민등록번호 : 아라비아숫자로 기재
 6. 군복무기간 :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한다.
 7. 자격증표기란 : 소지한 자격증명을 기재하고, 사본을 첨부한다.

【 별지 3 】

자 기 소 개 서

응시 번호	※ 담당자 기재	성명	

【작성요령】

- ① ‘성장과정 및 성격, 자신의 장·단점, 주요 경력, 지원동기 및 업무수행 계획(포부)’ 등을 자유롭게 기술
- ②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작성하고 워드프로세서 또는 수기 작성 가능
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무직근로자(실무)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(1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관련
- (2) 개인정보 수집 항목
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
- (3)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 - 보존사유 : 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 및 관리
 - 보존기간 : 채용 후 퇴직일까지
 - 보존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5조
- (4)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공무직근로자(실무)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.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무직근로자(사무원)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(1)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관련
- (2)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
주민등록번호
- (3)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 - 보존사유 : 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 및 관리
 - 보존기간 : 채용 후 퇴직일까지
 - 보존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, 23, 24조, 시행령 제18, 19조
- (4)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.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3.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(민감정보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(1)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관련
- (2) 민감정보 수집 항목
범죄경력정보 등
- (3)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 - 보존사유 : 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 및 관리
 - 보존기간 : 채용 후 퇴직일까지
 - 보존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, 17조
- (4)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공무직근로자(식당종사원)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

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019 년 월 일

성명 :

(서명)

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귀하

【 별지 7 】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귀하

공 지 사 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